

August 29, 2013

중국 서비스무역 외환관리 제도 간소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3년 7월 18일 <서비스무역 외환관리 지침> 및 <서비스무역 외환관리 지침 실시 세칙>(이하 총칭하여 “본 규정”)을 공표하여, 서비스무역 외환관리에 대한 기존의 49부 외환관리 법규를 폐지하고 본 규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서비스무역 외환관리 규정이 간소화·체계화되는 한편 서비스무역 관련 외환업무가 편리해졌습니다.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하에서는 본 규정 중 한국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서비스무역 외환업무에 관한 서류 심사 일원화

기존에는 서비스무역 관련 외환업무에 대한 서류의 진실성 여부를 일부는 외환관리국이 심사하고 일부는 외환지정은행이 심사하였는데, 본 규정에 따라 향후에는 모든 서류 심사 업무를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2. 미화 5만불 이하의 서비스무역 외환업무에 대한 서류 심사 폐지

본 규정에 따라 향후에는 미화 5만불 이하의 서비스무역 외환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원칙적으로 거래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만불 이하의 서비스무역 외환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라 대다수 소규모 서비스무역 외환업무가 아주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미화 5만불 이상의 서비스무역 외환업무에 대한 서류 심사 간소화

본 규정에 의하더라도 미화 5만불 이상의 서비스무역 외환업무에 대하여서는 금융기관이 거래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만, 본 규정에 따라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는 기존에 비해 간소화됩니다. 가령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 지급의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면 ① 서면신청서, ② 라이선스 계약, ③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통지, ④ 저작권 관리부서의 인허가 서류, ⑤ 상무부서의 <기술수입허가증> 또는 <기술수입계약 등기증>, ⑥ <기술수입계약 data 표> 및 ⑦ 세금납입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본 규정에 따르면 ① 라이선스 계약, ② 세금계산서(또는 지급통지) 및 ③ <기술수출입 허가증>(제한류 기술인 경우) 등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모두 세금납입증명을 제출해야 했으나, 본 규정에 따라 세금납입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2013년 7월 9일 국가세무총국과 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공포한 <국가외환관리국의 서비스무역 등 항목에 대한 대외지급 세무신고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에 따라 미화 5만불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세무기관에 신고하면 외환송금을 할 수 있도록 간

소화되었습니다. 다만, 본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의 인허가 또는 등기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여전히 서비스무역 외환송금 전에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최용원 변호사 [북경사무소] | TEL. +86 10 8447 5343 | E-Mail. ywchoi@shinkim.com |
| ● 원중재 변호사 [상해사무소] | TEL. +86 21 6235 0411 | E-Mail. jjwon@shinkim.com |
| ● 정천주 중국변호사 [서울사무소] | TEL. +82 2 316 4201 | E-Mail. tszheng@shinkim.com |
-